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58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주진우 · 박준태 · 엄태영
박상웅 · 곽규택 · 정성국
유용원 · 김 건 · 조배숙
이양수 · 고동진 · 김위상
안철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직자는 기존과는 다른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취업 환경 전반에 새로운 적응 부담을 안게 되었음.

특히 AI 채용시스템의 경우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직무 변화와 자동화는 일부 청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청년 고용 정책에 머물러 있고, AI·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 취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발·운영·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공지능·디지털분야 청년고용 촉진) ① 국가는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 채용 과정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년 직무전환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에 대하여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전단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제5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체 및 벤처 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년 직무전환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에 대하여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

-----.